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가. 제안사유

- 1)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원활한 자금유통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가)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나)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소상공인
다)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
라) 휴·폐업 중이 아닌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가) 보증규모 : 출연금의 10배수 이내
나)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융자기간 5년) 보증지원

3)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4) 출연예산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3,740	3,000	△74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출연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가. 제안사유

- 1)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수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예정에 따라, 기업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발굴·지원 강화를 위
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 취업상담 · 알선 및 직업상담사 관리
 - 일자리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권역별 거점 직업상담사 배치
 - 구인 · 구직 등록
 - 취업실적 통계 및 분석을 통한 ‘빈 일자리’ 신속매칭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 계층별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 채용행사 개최 계획 수립 및 운영
 - 동행면접 및 상설면접 운영 /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운영
- 권역별 거점운영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인기업 발굴단 운영
 - 민간 일자리정보 기반 구인기업 채용지원
 -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서비스 및 중소기업 인식 개선 홍보
 -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 우리시 산업구조에 맞는 제조업 구인난 완화

2) 위탁대상시설

- 시 설 명 : 화성시 일자리센터
- 위 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 규 모 : 288m²m²(1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장, 구직자 휴게실, 회의 공간

3) 위탁기간: 2024. 1. 1. ~ 2024. 12. 31. (1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업 인력난과 지역고용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가. 제안사유

- 1)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산업 진흥 도모
- 2)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조융자 잔액을 시군별 비율로 배분한 이차보전 지원예산의 30%를 시군별 부담함을 근거로 출연을 요청하는 사항임(70% 경기도 부담)

나.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2) 지원내용
 - 가)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융자지원
 - 나) 시설자금: 최대 30억원의 시설설비, 연구개발 비용 등 융자지원
- 3) 출연기관: 경기도
- 4) 출연예산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486,000	400,000	감2,086,000	재정여건 및 향후 지속 출연 위한 타당성 감안하여 출연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의거 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경기도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출연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가. 제안사유

- 1) 우리 시는 도 내 기업체 수가 가장 많고, 인구 100만 특례시로 성장 예정인 가운데 전국 시·군 경쟁력 지수 1위의 지방자치단체로써, 경쟁력이 있는 자족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관내 기업체 규모를 유지·확대시켜야 함.
- 2) 고용창출·세수증대 지속적 도모를 위해 관내 기업분포와 경제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필요에 따라 설립되어 4차 산업혁명·산업생태계 변화에 선제적·능동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관내 여건에 맞는 기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3)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요사업 현황

구 분	주 요 사 업	비고
미래전략산업 기술 기반 강화	미래차전환 기술지원, 수요연계형 반도체 소부장 제품 실증지원,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개선 지원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조성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KAIST-화성시 사이언스 허브 협력, 화성시 창업지원 플랫폼, 스타트업 Scale-up(성장) 지원, 화성시 창업벤처펀드 조성·운용 등	
기술 R&D 및 판로개척 역량 강화	화성형 TIPS(투자연계형 R&D 지원),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IP 지원 플랫폼 운영,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경영 인프라 개선	디지털 전환지원, 기업지원플랫폼 운영, 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스마트 산업거점 활성화	산업정책 조사 연구, 산학연협력 공동연구실 운영	
기관역량 강화추진	ESG경영전략체계 구축, 기관 홍보 강화	

2) 출연예산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8,613,190	14,315,620	5,702,430	'23.대비66% 증가
화성산업 진흥원 출연	인 건 비	1,254,466	2,168,592	914,126	
	운 영 비	921,215	1,507,180	585,965	
	사 업 비	6,437,509	10,639,848	4,202,33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 다만 도내 최대의 기업체 상주와 시군 경쟁력 전국 1위의 도시에 견주어 볼 때 미래산업 전환에 따른 신사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중소기업 지원 고도화 등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66%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다. 조직과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효율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가. 제안사유

- 1) 특례보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2) 출연금의 4배수로 보증규모를 조성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성장동력 창출
- 3) 원자재가격 상승 및 설비 확충 등을 위한 필요자금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보증규모를 위한 시의 출연 필요

나.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관내 중소기업
- 2) 지원내용: 완화된 심사로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의 보증지원
※ 보증규모는 기업 정상 상환 시 부활하며, 미소진 시 잔여한도는 이듬해로 이월됨
- 3) 출연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4) 출연예산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3년도 본예산액	2024년도 본예산액	증감액	비 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1,000,000	700,000	감300,000	재정상황 고려하여 전년대비 축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나, 전년대비 축소된 예산과 관련하여 향후 수요와 지원현황의 추이,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예산편성이 우선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가. 제안사유

- 1) 경기도, 화성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경기도와 화성시가 출연함.
- 2)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콘텐츠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

나.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관내 콘텐츠기업(출판,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
- 2) 지원내용: 관내 콘텐츠기업에 최대 5억원 한도의 보증지원
- 3) 출연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4) 협약주체: 경기도, 화성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 5) 협약사항
 - 2차협약(2017~2019): 선보증 후출연 방식(총 740,000천원 보증)
 - 3차협약(2019~2025): 선출연 후보증 방식(총 900,000천원 보증)

※ 2023. 9.기준 820,000천원 보증하여, 협약만료일까지 추가출연필요
- 6) 출연 예산액: 11,750천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협약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합계	23,375	11,750
	2차	13,375	1,750
	3차	10,000	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콘텐츠산업의 경우 성장 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아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가. 제안사유

- 1)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의 만료(2021. 7. 1. ~ 2023. 12. 31.) 이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사업수행 등 소공인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사업의 지속성·연속성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위탁기간)에 의거 화성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자하며,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20조(재계약) 규정 등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내용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공동 기계장비 사용 및 활용 지원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유지 관리 및 보수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인력 운영 관리
- 소공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술보급 및 기술혁신 지원
- 소공인 및 관계자 네트워킹 활성화
 - 소공인의 숙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업 종간의 협업 활동 지원

2) 위탁대상시설

- 시설명 :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00-1 외 8필지, 나동, 라동
- 규 모 : 418.26㎡(1층, 3~4층)
- 조성규모: 연면적 1,835.60㎡(2개동, 지상1층)
 - ※ 장비동: 1,487.60㎡ / 교육동: 348㎡
- 공간구성: 전시·판매장, 교류 공간, 스마트 장비실, 공용 작업장 등

3) 재위탁기간: 2024. 1. 1. ~ 2024. 12. 31. (1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화성상공회의소와의 계약기간 1년 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센터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계약연장은 타당하나, 수탁기관 재계약시 사업수행실적 과 관리능력 및 계획수립 등의 세밀한 평가가 필요해 보임.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가. 제안사유

- 1)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기간(2022. 10. 1. ~ 2023. 12. 31.)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시설을 방문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과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 2)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 요청)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내용

- 공동기반시설(기계장비) 운영 및 관리
- 프로그램(공동작업실 활동지원 및 기술교육 연계지원 사업) 운영
- 소공인 및 관계자 대상 네트워킹 활성화 마련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탁대상시설

구 분	내 용
소재지	·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로얄앤크퍼니 R5동 1, 2층
위탁현황	· 현 수탁기관: (사)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 (대표 : 김영홍) · 위탁 기간 : 2022. 10. 1. ~ 2023. 12. 31. (1년 3개월)
시설규모	· 723.23㎡
주요시설	· 공동장비 작업실, 교육실, 사무실, 창고

3) 위탁기간: 2024. 1. 1. ~ 12. 31. (1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이재환 투자유치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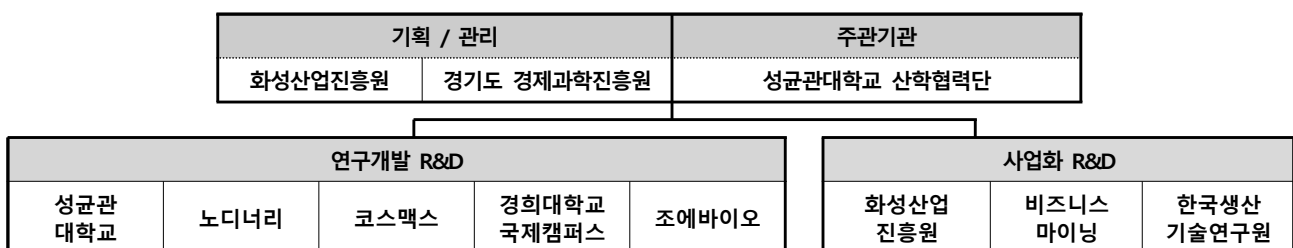
가. 제안사유

- 1) 바이오(화장품) 산업은 아이디어를 통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고 개발·생산·유통·마케팅 관련 인력 수요가 많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며,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 2) 화성시 바이오(화장품)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양적 규모를 지니며, 향남제약단지, 바이오벨리 등 관련산업의 직접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3) 본 R&D연구개발 지원과제는 기존의 유화제와 강한 물리력을 필요로 하는 고전적인 화장품 제조 기술을 바이오 기술로 바꾸는 기술로 화장품 제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물을 토대로 관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화성시 화이트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

나.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R&D연구개발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도>



- 2) 지원내용: 화이트바이오산업 대응을 위한 환경 및 피부친화 바이오소재 및 제품개발 R&D연구개발 비용 지원
- 3) 출연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4) 지원절차
 - 가) 공모사업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 출연금 교부
 - 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연구개발비 입금하고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별도의 계좌를 통해 연구비 지출 (연구비 집행 및 정산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1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출연을 통해 바이오 화장품 산업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향후 화성시 세수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가. 제안사유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에 따른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 2)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 3) 우리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공공 급식 사업, 6차 가공사업 등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재단 주요사업

-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7개소, 연매출 292억원, 이용객 117만명
- 학교·공공 급식 공급: 유·초·중·고 203개소, 어린이집 시범사업 60개소
-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안전성 검사(잔류농약, 방사능 등) 4,016건
- 로컬푸드 생산자·소비자 참여: 출하농가 교육(1,384명), 소비자 모니터단 운영(41명)
- 로컬푸드 6차 가공사업: 농민 가공장 운영, 화성로컬푸드가공생산자협동조합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7종 14개)
- 재단 위탁사업 추진: 화성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무국 운영(징검다리 참여자 교육 및 컨설팅), 화성송산포도축제 운영 등

2) 지원현황

- 지원대상: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인 건 비	· 기본급(일반직 64명, 업무지원직 54명, 기간제 5명) · 기타수당(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및 퇴직급여충당금	
운 영 비	· 공공요금(수도, 가스, 전화 등) 및 제세공과금 · 시설물 관리(경비, 방역) 및 직원 교육·복리후생	
사 업 비	· 재단 주요 사업 · 기타 관내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 · 재단 홍보 사업	사업비는 출연금이 아닌 재단 수익으로 충당

3) 출연 예산액

(단위: 천 원)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 지원센터 출연	계	6,000,000	6,000,000	-	
	인 건 비	5,243,263	5,342,769	99,506	
	운 영 비	756,737	657,231	△99,506	
	사 업 비	-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설치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등 재단 주요사업들이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농식품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재단 고유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재단 조직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6.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유청모 기후환경과장)

가. 제안사유

- 1) 급격한 인구증가와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화된 환경전문기관 운영 필요
- 2) 시민소통, 인식조사 등을 반영한 화성시 환경사업 발굴, 민·관협력체계 구축, 2050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교육 선도를 통한 환경서비스를 향상시켜 맞춤형 환경행정 구현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요사업

- 가) 화성시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
- 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 다) 지속가능한 화성시 ESG 경영 확산
- 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마) 사회환경교육 강화

2) 출연 예산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재)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인 건 비	809,204	850,759	41,555	
	운 영 비	547,032	772,044	225,012	
	사 업 비	550,000	750,000	200,000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등 신규사업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 다만 조직과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경전문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임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6.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가. 제안사유

- 1) 화성시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수소경제 구축을 위하여, 2023. 4. 14. 화성시-HPS(주)-SK에코플랜트(주)-(주)삼천리간 화성 양감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축조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유지 현황

위치	지목	공부면적 (㎡)	개별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원)	용도 (관리부서)	비고
양감면 송산리 26	답	20,197	84,100 (2023.1.1.기준)	1,698,567,700	행정재산 (신재생에너지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건립

2) 사유지 임대 계획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가) 1단계 사업(2023년) : 총 면적 20,197㎡ 중 6,790㎡ 사용수익허가 예정

나) 2단계 사업(2024년) : 단계적으로 사업부지 사용수익허가 추진 예정

3) 영구축조물 내용

가) 관리동(1F), 변압기 및 전기실(1F), 주기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임대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10. 26.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가. 제안사유

- 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회계혼용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저촉될 수 있는 규정의 정비를 통해 입법체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0호에 저촉될 수 있는 규정 정비 (현행 제9조 삭제).
- 2) 특별회계의 설치 조문 정비(안 제20조제1항).
- 3)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 제20조의2 신설 및 현행 제37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저촉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의 회계혼용 방지하고, 상위법령 저촉될 수 있는 규정정비로 입법체계성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